



[해설]
中企 대표들이 매긴
중기부 수장의 성적표
53점 '낙제점'
03

코스피 2101.31 (-13.04)	코스닥 701.12 (-7.51)
금리 (국고채 3년) 1.90 (-0.01)	환율 (원·달러) 1114.10 (+8.80) (5일)

반시장 정책 봇물

정부, 취약차주 대출원금 45% 감면 추진

'돈 갚으면 손해' 도덕적 해이

선제대응으로 신불자 예방
기한이익상실 시점 연장
내년 상반기 중 도입 계획

'모럴해저드' 초래 우려도

정부와 은행권이 취약차주의 대출 원금을 많게는 45%까지 감면해주는 개인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상은 사회 취약계층 중에서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을 정도로 과도한 사람이다.

취약차주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지만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빗탕감에 이어 사전 대출원금 감면으로 성실히 원리금 내기 보다 버티면 된다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도 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독당국과 은행권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 방안은 취약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 차원에서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자는 취지다.



/유토이미지

주들이라도 이런 요건에 해당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 아웃을 통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는 한 번 연체에 빠지면 채무상환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를 돋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도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금융사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취약차주 대상 사적 채무 조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상담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연내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전산개발과 대출기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이번 취약차주 지원 방안은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을 정도로 많아 사실상 대출 상황이 어려워지면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것을 논의 중이다.

연체에 빠지지 않은 정상 차

/안상미 기자 smahn@metroseoul.co.kr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을 정부가 나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기업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돈을 빌려 쓴 사람에게 최대 45% 감면도 추진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도 나온다. 민간임대 월세 인상폭도 정부 주도로 제한될 예정이어서 공급 축소가 예상된다.

월세 5% 인상제한도 부족해 2~3%로 낮추기로

공급부족 초래, 서민에 피해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대상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

매년 주거비 물가지수 공표
변동률 고려 증액기준 제시



/유토이미지

내년부터 100가구가 이상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한도가 기준 5%에서 2~3%대로 낮아진다.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주택에서는 지금처럼 인근 지역의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현재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명칭으로 발표되는 통계는 없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